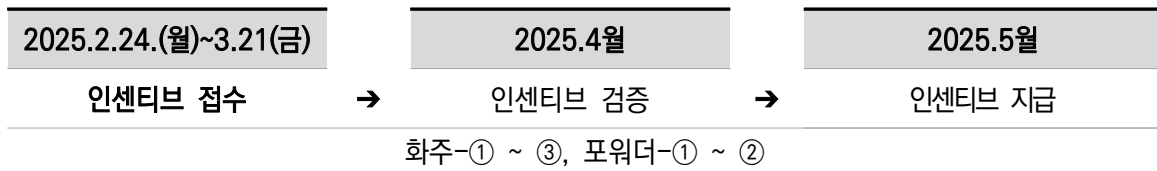


2024년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기준

※ 공통사항

○ 실적 적용 대상 기간 : 2024.01.01. ~ 2024.12.31.

○ 주요 일정



○ 예산 및 산정·지급 관련 사항

- 추후 확정되는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광역시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금액 등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
- 인센티브 지급액은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
- 국외 소재 업체의 경우, 한국 지사 또는 국내 대리점으로 지급 가능하며 해외송금은 불가함
- 단가제 인센티브의 경우, 동일 기준(항목) 내 잔액 발생 시 단가를 증액하고, 배정예산 초과 시 단가를 감액하여 지급함
- 실적비례제 인센티브의 경우, 각 기업의 수령액은 기준별(항목별) 배정예산 중 50%를 초과할 수 없음

○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,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음

-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미납 업체
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신청·지급 받거나 불법적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

○ 지급기준의 문구·용어 해석, 기타 제도운영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 인천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

□ 화주·포워드 인센티브

◎ 검증 방법 : 업체에서 제출한 B/L 및 수출입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검증하며, 오차 발생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검증 물량 적용

· [기준1] 수출 물동량(화주)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4년 인천항 처리 '컨'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(G.W.T)이 전년 대비 2% 이상 증가한 화주
산 식	- (실적비례제) 예산 ×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÷ 대상 업체 증가 물동량 합계
예 산	173백만원
비 고	- 전년도 실적이 없는 기업은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

· [기준2] 전략지역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4년 인천항의 전략지역(미주·유럽·인도·중동) 직항항로를 이용하여 '적' '컨'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 또는 수입한 수하인(CONSIGNEE) ※ 포워드 또한 신청 가능하며, 동일 건에 대해 실화주·포워드 중복 신청 시 실화주에게만 지급
산 식	- (단가제) 수출 물동량 X TEU당 40,000원, 수입 물동량 X TEU당 20,000원
비 고	- 예산 초과 시 수출 물동량에 대해 우선 지급 - 증빙은 MASTER 및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고, 수출은 SHIPPER,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이며, (단, MASTER DIRECT BL은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 가능하며,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)
예 산	173백만원

· [기준3] 냉동·냉장(Reefer)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4년 인천항을 통해 냉동·냉장 '적' '컨' 1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 - 2024년 인천항을 통해 미주·유럽으로부터 냉동·냉장 '적' '컨' 10TEU 이상 수입한 수하인(CONSIGNEE) ※ 포워드 또한 신청 가능하며, 동일 건에 대해 실화주·포워드 중복 신청 시 실화주에게만 지급
산 식	- (단가제) 대상 물동량 X TEU당 50,000원
비 고	- 예산 초과 시 수출 물동량에 대해 우선 지급 - 증빙은 MASTER 및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고, 수출은 SHIPPER,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이며, (단, MASTER DIRECT BL은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 가능하며,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)
예 산	217백만원

· [기준4] 수출 물동량(포워더)
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
	항목① - 규모형	항목② - 증가형												
대 상	- 2024년 인천항 처리 '컨'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(G.W.T) 규모 1~5위 포워더 (연간 1만 톤 이상 처리 필수)	- 2024년 인천항 처리 '컨'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 (G.W.T)이 전년 대비 2% 이상 증가한 포워더												
산 식	- 단가제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1위</th> <th>2위</th> <th>3위</th> <th>4위</th> <th>5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단가(백만원)</td> <td>43</td> <td>35</td> <td>26</td> <td>17</td> <td>9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	단가(백만원)	43	35	26	17	9	- (실적비례제) 예산 ×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÷ 대상 업체 증가 물동량 합계
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									
단가(백만원)	43	35	26	17	9									
비 고	- House B/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더 코드(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)의 실적을 산정 - 전년도 실적이 없는 기업은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 - 항목①,②에 모두 해당할 시 둘 중 수령액이 더 큰 항목에서 지급하며, 중복 수령 불가 - 규모형 인센티브 대상 포워더가 증가형 인센티브 수령 시 차순위 포워더에게 규모형 인센티브 지급													
예 산	130백만원	260백만원												

· [기준5] 복합운송 (Sea&Air, Air&Sea)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4년 인천항을 통해 Sea&Air 또는 Air&Sea 복합운송 실적 보유 포워더
산 식	- (실적비례제) 예산 × 업체별 물동량 ÷ 대상 업체 물동량 합계
비 고	- 환적을 통한 복합운송 실적만 인정하며, 수출입 환적 물동량이 다를 경우 더 작은 물동량을 실적으로 인정 - 수출 또는 수입 환적 중 한 가지만 처리했을 경우 수출입 물동량 중 50% 인정
예 산	43백만원

※ [기준6] 인천시 포워더 인센티브는 '24.4분기 지급 완료